

울산광역시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규정

제정 2005.12.14.

개정 2015.12.21.

개정 2020.02.10.

제1조(목적)

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

- ① 울산광역시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
- ② 1항에 해당되는 자로써
 - 불의의 사고로 인해 중증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의 경우
 - 중증이상의 질환으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,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
단, 상피내암, 경계선 종양, 갑상선암은 제외한다.
 -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
-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제3조(운영기금)

매년 경사회계 이월금의 10%를 적립한 금액과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

제4조(지급 기준 및 금액)

- ① 회원 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.

회원 납부 횟수	지급액
5년 미만	100,000원
5년 이상 10년 미만	150,000원
10년 이상 15년 미만	200,000원
15년 이상	300,000원

- ②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.

제5조(지원신청 및 접수방법)

- ① 신청인은 복지기금 신청서와 진단서를 소속기관 간호부서에 제출한다.
- ② 소속기관의 간호부서장은 지원사유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울산광역시병원간호사회로 제출한다.

제출서류 : 복지기금 지원신청서(소정양식)
진단서(또는 관련 입증자료)
통장사본

- ③ 이사회에서 심의를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
- ④ 심사결과는 소속기관 간호부서장과 개인 통보한다.

※ 부칙 : 대상 선정 기준

제1조(불의의 사고)

- ① 전치 10주 이상(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)의 상해를 입은 경우
- ② 3급 이상의 장애(지체, 뇌 병변, 시각, 청각, 언어, 신장 및 심장장애)를 입은 경우
- ③ 사망 (※근무시간 중이 아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생한 경우는 인정)

제2조(중증이상의 질환)

- 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,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
- ② 질병발병 및 치료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
- ③ 근무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

제3조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